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나3136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나313641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 선고 2019가단75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10. 20.

판결선고 2021. 11. 1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 선고 2019가단75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265,9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영애, 판사 서범준, 판사 박치봉